



제 420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비 사용 등 >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51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비 사용 등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0. 30.
3. 회 부 일: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운영비 사용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u>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u>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u>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u> ----- ----- ---- <u>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u> <u>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u> <u>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u> <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② <u>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삭 제></u>

다. 검토의견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년부터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환급금 지급,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 운영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¹⁾
- 또한, 수탁사업자는 필요한 자본금을 자체 조달하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하였음²⁾.

-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 투표 금액, 대상 운동경기 및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25조에 따른 수탁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환급금) ①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금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 제28조(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투표권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여 적중한 자에게 환급금을 주는 스포츠레저게임
사업 목적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기금조성
사업 기관	(승인·감독) 문체부/ (발행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주)스포츠토토코리아 * 민간위탁(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주요 연혁	• ('99. 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공포 (투표권사업 도입근거 신설) • ('00.12.) 수탁사업자 선정 ((주)한국타이거폴스, 이후 (주)스포츠토토로 변경) • ('01.10.) 발매 개시 • ('02.10.) 발매 중단 (수탁사 재무유동성 악화) • ('03. 7.) 발매 재개 (수탁사 최대주주 변경) • ('12.11.~'13.12.) 투표권사업 공영화 법안 발의 및 개정 추진 * 수탁사 경영진 횡령·배임 발생(형사 절차 진행, '12.7.~'14.9.) • ('15. 4.) 수탁사업자 선정((주)케이토토, '15.7.~'20.6.) * 수탁사 입찰과정 중 소송 등 발생으로 계약 만료된 과거 수탁사가 한시적 연장 운영('14.7.~'15.6.) • ('20.1.~7.) 수탁사업자 선정((주)스포츠토토코리아, '20.7.~'25.6.) 및 사업개시 • ('22. 1.) 공영화 법안 개정(법률 제18760호, '22.1.18., 일부개정, '22.8.11. 시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 수탁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간 과열 경쟁, 수탁사의 부조리, 전문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의 변경(공영화)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2022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단 100% 출자회사에의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매출액 중 일부(10% 이내)를 운영비(사업 경비 + 사업 위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됨³⁾⁴⁾.

3) (추진경과) 개정안 발의(이상헌의원실, '20.9.17.) →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의결('21.12.8.) →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21.12.9., 대안반영폐기) → 법사위 의결('21.12.30.) → 본회의 의결('21.12.31.) → 공포('22.1.18.)

○ 그런데 총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의 출연 관련 규정인 현행법 제29조는 함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구분	구법 (2022년 1월 개정 전)	현행법	개정 내용
사업 위탁 (제25조)	국민체육진흥공단 → 단체나 개인에게 사업 위탁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단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한 주식회사에 위탁	(현행과 동일)
운영비 (제28조)	수탁사업자 : 총매출액 25% 내에서 <u>위탁 운영비</u> 사용 가능 (사업 운영 경비 + 수탁 수수료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 총매출액 10% 내에서 <u>운영비</u> 사용 가능 (사업 경비 + 위탁 운영비)	(현행과 동일)
수익금 출연 (제29조)	수탁사업자는 '(총매출액-환급금 - <u>위탁 운영비</u>)'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달 → 공단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매출액-환급금 - <u>운영비</u>)'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

4)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28조(운영비)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는 수익금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위탁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 경비까지 포함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 조문으로 타당하다고 보임⁵⁾.

- 다만, 수익금의 이전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 제29조제1항을 참고하여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⁶⁾을 고려할 수 있겠음.

[개정안에 따른 수익금의 이전 과정]



5) 현재도 위탁운영비 및 경비를 모두 제한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6) <문체부 수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유사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375

7) 의안정보 2121000,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23.5.17. 전체회의 상정, 23.6.27. 법안소위 의결, 23.7.7. 전체회의 의결, 24.5.29. 임기만료폐기

[참고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현황

□ 체육진흥투표권 유형

구 분	주 요 내 용		
상품종류	○ 총 20종(고정환급률식 18종, 고정배당률식 2종) * 증량발행 제외시 17종		
	구 분	고정환급률식(토토) 상품	고정배당률식(프로토) 상품
	운영방식	●전체 투표금액 중 고정된 환급비율 (50%)로 적중환급금 지급	●운영자가 경기결과별로 고정된 적중 배당률(Odds) 제시
	환 급 률	●고정 (50%)	●변동 (연간 63.5±5%)
	매출점유 ('23년 기준)	●7.8%	●92.2%
투표금액	○ 회차당 최소 100원~1,000원, 최대 10만원		
발행대상 종목·경기	○ (종목)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 및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종목 * 씨름 : 종목 내부사유로 '07년부터 미발행 ○ (경기) 국내외 경기 (월드컵 등 국제대회 포함)		
발행회차	○ 연간 1,200회 내외 (문체부장관 승인)		
발매방법	○ 전국 6,500여 판매점, 인터넷 발매사이트(www.betman.co.kr)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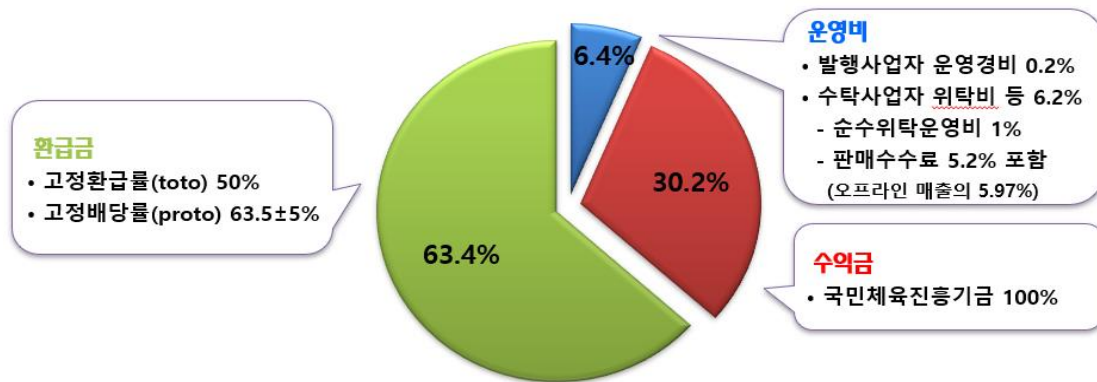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단위 :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계획)
매출액			48,928	56,195	58,090	60,985	67,046
환급금			30,461	34,900	36,172	38,673	41,670
운영비	수탁사업자	위탁운영비	564	567	599	630	572
	위탁운영비	판매수수료	2,610	3,000	3,057	3,147	3,510
	발행사업자(공단) 운영경비		-	-	-	106	257
수익금(체육진흥기금)			15,293	17,728	18,262	18,429	21,0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배분비율 ('23년 실적 기준)]



* 증량발행 제외('23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국제대회 조직위 84억원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現 수탁사업자 현황

- 회 사 명 : (주)스포츠토토코리아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길 12 해남2빌딩 5층)
- 대 표 자 : 송영웅 (前 한국일보 미래기획실장)
- 자 본 금 : 400억원 (자금대행 협약사 : 우리은행)

주 주	에이스침대	엠파크	비바리퍼블리카	한국일보	코넥	한글과컴퓨터
지분율 (자본금)	38% (152억원)	27% (108억원)	15% (60억원)	10% (40억원)	5% (20억원)	5% (20억원)

* 엠파크·한국일보 : 동화그룹(동화기업(건축자재)) 계열사

- 조 직 : 1대표이사/1감사/6본부(단)/11부문(실)/32팀, 인력 : 210명(선수단 별도)
- 위탁운영기간 : '20. 7. 1. ~ '25. 6. 30. (5년)

□ 체육진흥권 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 수탁사업자 선정 승인 및 위탁운영비율 지정 ○ 연간 사업계획 승인, 주최단체 지정 등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 조성, 제도개선 및 규제장치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발행사업자)	○ 수탁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 상품발행계획 심사·승인, 수익금 배분 ○ 사업 건전화 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계획 수립·시행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관련 관리·감독
스포츠토토코리아 (수탁사업자)	○ 상품발행계획 작성·승인요청, 발매일정·배당률 고지 및 발매 ○ 발매현황·대상경기 모니터링, 적중결과 공고, 환급금 등 지급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기타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관련 업무
우리은행 (자금대행사업자)	○ 환급금 지급(환급금 과세* 포함), 투표권 자금관리 업무 * 과세기준 (환급금의 22% :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 100배 초과 적중(적중금 10만원 초과) 또는 2백만원 초과 적중
판 매 점	○ 투표권 판매 및 소액 환급금 지급(전국 6,500여 개소)
주최단체	○ 연간 경기일정 제출, 경기개최, 경기결과 확정·통보 ○ 경기 관련자료·변경사항 통보